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312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백중현

피고(선정당사자) 망 A의 소송수계인 B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망 A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0.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30. 접수 제33785호로 마친 C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C에 대하여 2022. 6. 19.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2022. 4. 11.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76,351,331원이다. 나. C은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부동산 전체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0. 11. 30. 망 A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3785호로써 망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22. 6. 8.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망 A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망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말미암아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망 A의 악의도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망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망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 C에게 공사를 의뢰하니 C이 이 사건 부동산이 노후되어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공사비용에 대한 담보조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명의를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C은 이미 2018. 7. 30. 폐업하였음에도 망 A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받아간 것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압류마저 마쳐져서 피고들이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를 해할 의도는 없었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으며 그에 의할 때 망 A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매매를 원인으로 2020. 4. 21.자로 A와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망 A 계좌에서 'D' 명의로 2019. 7. 29. 30,000,000원이 송금된바 있다.
-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0. 9. 17.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020. 3. 10. 국세 4,995,130원이 납부되어 위 압류등기는 해제되었다.
- C에게, 2020. 4. 21. 피고(선정당사자)가 5,000,000원, 2020. 4. 27. 500,000원, 2020. 5. 28. 3,000,000원, 망 A가 2020. 11. 30. 5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가 2020. 12. 2.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들 측에서 C에게 10,5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한 공사 견적서나 공사 계약서 등 공사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